

●청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6-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21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제2항제8호
-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신고폐지
- 4. 청문일시(의견제출기간) : 2026.9.15.(화) 14:00
-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청주전파관리소 회의실[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157번길 30]
- 6. 대상무선국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고지주소	처분예정
1	유한회사 삼O토건	94-2024-56-0000244	간이무선국	삼O증평500	충청북도 증평군길 증평읍 가장골길	신고폐지
2		94-2024-56-0000245	간이무선국	삼O증평501		신고폐지
3		94-2024-56-0000246	간이무선국	삼O증평502		신고폐지
4		94-2024-56-0000247	간이무선국	삼O증평503		신고폐지
5		94-2024-56-0000248	간이무선국	삼O증평504		신고폐지
6		94-2024-56-0000249	간이무선국	삼O증평505		신고폐지

7. 유의사항

- 가. 귀하(사)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미리 서면으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나. 귀하(사)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예정대로 처분(신고폐지)이 실시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만약, 위 청문일까지 체납한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처분이 자동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